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Catalyst 3750X 외 1식, 통합플랫폼 보안장비(방화벽, VPN) 1식, 통합플랫폼 IOT 연계기간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글로벌텔레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4,792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글로벌텔레콤

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IBM Storwize V7000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씨플랫폼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7,822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씨플랫폼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VSP G200 2식, VSP G400 1식, G370 1식, HUSVM 1식, E-590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아이티센클로잇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 1. 1. ~ 2027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144,641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아이티센클로잇

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무정전전원장치 2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예성엔지니어링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5,665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7월 15일

발주기관

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예성엔지니어링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NAIZ-VMS 외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네이즈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187,731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

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네이즈

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XEUS Sever v2.0 외 1식, WEB GIS 1식(OS 및 미들웨어 포함),
영상중계용 스트리밍 S/W, RTSP 영상제공 S/W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지오맥스소프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13,157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지오맥스소프트

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가드온 v1.0 외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온솔아이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25,551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온솔아이티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통합플랫폼 서버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한국후지쯔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합의 하는 금액 4,580,000원 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합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한국후지쯔(주) (인)

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통합플랫폼 L3 스위치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코어엣지네트웍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928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코어엣지네트웍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통합플랫폼 DBMS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티맥스티베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1,854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티맥스티베로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통합플랫폼 5대연계서비스 패키지 1식(OS 및 미들웨어 포함)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사)스마트도시협회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4,717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사)스마트도시협회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통합플랫폼 망연계장비(S/W 포함)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한씩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CCTV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20,433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한씩 (인)

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1식(서버 포함, 1인 상주 포함)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쿠도커뮤니케이션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143,689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상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쿠도커뮤니케이션(주)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영상반출시스템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스피어에이엑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3,246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상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스피어에이엑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망 전환장치(SAN 스위치)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아이웍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1,269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 . 공급사는 상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아이웍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- 제 품 명 : 네트워크 스위치(SG2452GX) 1식
- 발 주 기 관 : 부천시
- 제조사. 공급사 : (주)한드림넷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사에서 부천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기간은 2027. 1. 1. ~ 2027. 12. 31.로 하며 2027. 1. 1.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 공급사가 협의 하는 금액 315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. 기술지원 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기술지원) 제조사.공급사는 상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일

발주기관 부 천 시 장 (인)

제조사. 공급사 (주)한드림넷 (인)